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보도참고자료

희망의 새시대

http://www.motie.go.kr

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: 바이오나노과 정석진 과장(2110-4761), 김종락 사무관(2110-4763)

'평창,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총회 개최도시로 선정'

- 산업부,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국제논의 선도 -

□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한 이동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2014년 9월 개최예정인 제7차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총회(이하 'MOP-7'이라 함) 개최지로 강원 평창이 선정되었음

※ 바이오안전성의정서(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, '00.1월 캐나다 몬트리올 채택)
생물다양성협약의 부속의정서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인체위해 및 환경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한 이동, 취급,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국제협약

○ MOP-7은 국가별 바이오안전성의정서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, 의정서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는 국제회의로,

○ 동 총회에는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(146개국) 및 비당사국 대표단, 기업, NGO 등 2000여명이 참석할 예정

○ MOP-7 개최도시 선정은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총괄부처인 환경부와 산업부 공동 주관으로 '개최도시 선정심사위원회'를 열어 강원 평창을 개최도시로 최종 선정

* 생물다양성협약 : 생물다양성을 보전,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며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협약('93.12월 발효)

* 관례적으로 MOP-7은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와 같은 장소에서 연이어 개최

□ 금번 제7차 총회에서 논의될 주요 아젠다는 새로운 유전자변형생물체(이하 LMO, Living Modified Organisms)에 대한 "위해성평가 가이던스" 채택여부, "사회·경제적 고려 사항"에 대한 명확한 개념 마련, 식품·사료용 LMO의 수출입에 따른 식별, 표시 방법 등임

* 위해성평가 가이던스 : 유전자변형 나무, 모기 등 새로 개발된 LMO에 대한 위해성 평가 항목 등을 제시한 새로운 지침으로, 현재 제출된 가이던스를 우선 채택하고 지속적으로 수정하자는 의견과 채택하기 전에 철저히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립

* 위해성평가 : LMO의 수입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인체, 환경 등에 안전한지 평가하는 것을 말함

* 사회·경제적 고려 : LMO 수입 여부를 결정할 때 LMO가 미칠 수 있는 사회·경제적 영향을 고려할 수 있다고 의정서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지만, 그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적용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음

* 식품·사료용 LMO의 식별, 표시 : 국제 교역이 가장 빈번한 식품·사료용 LMO(콩, 옥수수 등)의 수출입에 따른 구체적 식별 방법과 표시에 관한 논의

□ 동 총회 개최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인식 및 국제규범에 대한 이해를 높여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

○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성확보 및 생물다양성 보전 선도국으로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국제적 이미지 제고

* 전세계 2만여명 방문, 총회개최 경제적 효과 4,631억원 추정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나노과 김종락 사무관(☎ 02-2110-476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및 당사국총회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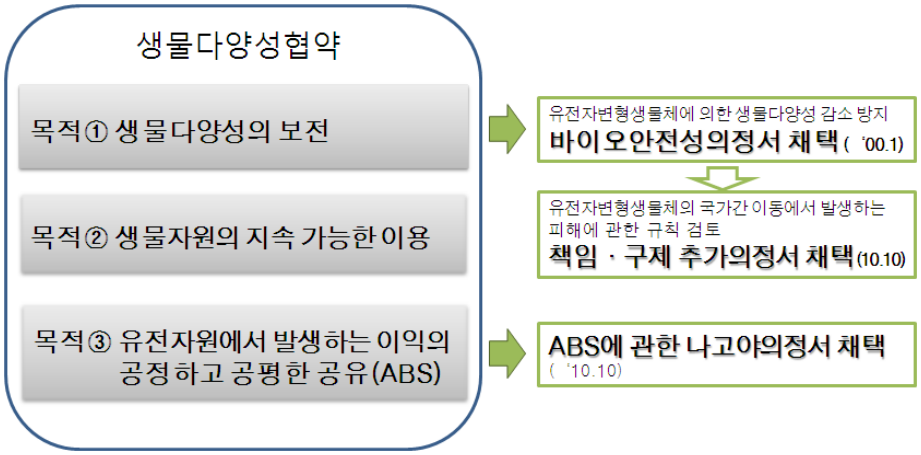
□ 바이오안전성의정서 개요

○ (내용)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한 이동, 취급 및 이용(특히, 국가간 이동에 초점을 두고)을 목적으로 하는 다자간 협정

○ (발효) '00.1.30일 채택, 2'03.9.11일 발효(한국은 08.1월 발효)

○ (당사국) 현재 164개국 가입('13.4월 기준)

<생물다양성 협약과 바이오안전성의정서의 관계>



□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총회 개요

○ (총회 역할) 국가별 바이오안전성의정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, 의정서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 결정(비당사국 및 NGO 등 참관 가능)

○ (참석 규모) 각국 대표단 및 기업, NGO 등 2,000명 내외 등록, 총회 기간 중 연인원 1만 명 내외 규모

○ (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와의 관계) 바이오안전성의정서가 생물다양성협약을 근거로 채택되었지만, 총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구분되어 있음